

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안

의안 번호	45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7.12.13.

제 출 자 : 고성군수

1. 제안이유

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로가 많은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기를 앙양하고 앞으로 숨은 세원 발굴과 군재정 확보를 기하는 기쁨을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포상금은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 및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하도록 함(안 제2조)
- 나. 포상금 지급은 징수세액의 100분의 5를 지급하도록 함(안 제3호)
- 다. 체납액 및 숨은 세원 발굴 과정 대장을 비치 기록하도록 함(안 제4조)
- 라. 읍면장은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함(안 제5조)
- 마. 포상금은 신청서를 심사하여 년2회 지급하도록 함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경상남도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

고성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고성군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급범위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상한다.

1.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
2.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케 한 공무원 및 민간인

제3조(지급구분) ①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세액의 100분의 5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.

1.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자
2. 납세의무 발생일로 부터 1년이상 경과한 누락된 세원을 포착부과한 자
3. 도로, 하천등의 무단점용을 적발 제보한 자

②전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 지급한다.

③제2항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 지급한다.

제4조(대장비치) 읍.면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과정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포상금 지급신청) ①읍.면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기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.면장이 신청하여야 한다.

제6조(포상금 지급) 군수는 제5조의 신청서를 심사 확인하여 년2회 포상금을 지급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서식]

과년도체납액징수대장

징수 월일	징 수 자		징 수 액					체 납 자		계장 확인	비고
	직급	성명	년도	납기	고지서 번호	과목	징수 액	주 소	성명		

[별지 제2호서식]

숨은세원발굴과정대장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	과 목	구분	발굴 세원	납세의무자		접수 월일	계장 확인	비고
	직급	주소	성명				주 소	성명			

구분란에는 과표 초과, 미등기, 1년초과, 무단점용 등을 표시할 것.

[별지 제3호서식]

분장수포상금신청서

수신 : 고성군수

참조 : 재무과장

발신 : 음(면)장

구	분	전 수	금 액			포 상 금
			세 액	가 산 금	계	
과년도체납액징수						
숨은세원발굴	과 표 초 과					
	미 등 기					
	등 기 1 년 경 과					
	무 단 점 용					
계						

[별지 제3호서식 부표1]

과년도채납액내역

재무계장(인)

징수자			징수내역			전수	포상금	비고
소속	직	성명	금액	가산금	금액			

[별지 제3호서식 부표2]

숨은세원발굴내역

재무계장(인)

납기	부과자(제보자)			과목	구분	발굴세원	구분	징수 월일	전수	포상금	비고
	소속	직위 (주소)	성명								